



기안용지

우정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181.7- (절파번호 307)	전 결 규정 조 전 결 사 환	
처리기간	66	결재	1978. 7. 19
시행일자	78. 7.	시장	
보존년한		7.19	No 2169
보조기관	제1부 시장	법제계장	협조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기안책임자	김현중		
경수참조	유신조	과안참조	통제
제 목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검열 1978. 7. 19 서울특별시 등록관리국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이 조례 제 944호 (75. 4.23)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상제됨으로써 실효된 규정이며			
2.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위원회 조례에 보다 공법위한 기능을 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첨 부 : 1. 폐지안 1부			
2. 건축 444.1- 699 (78. 6. 22) 1부. 끝.			
(제2안)			
수신	문화공보관		
제목	시보 게재		
1. 법집.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규정을.			

정서

관인

발송

시보에 게재 발행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제 호 1부. 끝.

(제3안)

수신 건축지도과장

제목 훈령폐지

1. 법침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시보에 게재
폐지 함령하였으니 시행에 만전을 기함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제 호 1부. 끝.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규정폐지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구 라



서울특별시 운영 제 1호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 444.1-689 74-5680 1978. 6. 22.

수신 법무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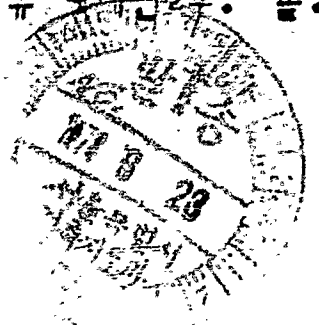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지시회신

1. 법부 181.5,6,7-528 (78. 6. 9) 호와 관련입니다.
2. 당과 소관사항중 사실상 실효된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의 조력은 별첨과 같이 보고하고 그외는 정비대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3. 당과 소관조례규칙훈령명
 - 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례
 - 나.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 다. "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조례
 - 라. " 공치지구조례
 - 마. " 공치지구 건축조례
 - 바. " 아파트 지구 건축조례
 - 사. " 건축 행정처음규칙
 - 아. " 계획위험지구 내의 건축 제한에 관한조례

첨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지이유 표지인 2부. 끝.



담	단	법	개	제	장	법	부	담	당	관



건축지도과장

지정행위사유규칙 제지이유 표지인 0144

서울특별시 이관지구 조성위원회 운영규정 제지이유

1. 서울특별시 이관지구 권역조례 제7호 및 제8호의 취지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관지구 조성위원회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이관지구 조성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으나 당시 이관지구 권역조례가 1970. 11. 6 조례 제 643호로 제정된후 1975. 4. 23 제 704호 (전면개정)로 바뀌어 제정되면서 이관지구 조성위원회 및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음
2. 1974. 8. 25 조례 제 811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조례 제22조 (기능)에 의거 목적자체가 증빙되는 사항이므로 설치코자 함

기능명	이행 과목	지 역 사 항	
		이행	계정
행정계	3	<u>소방명정(지방소방명)이하 외 과서관 시내전보</u>	<u>소방명(지방소방명)이하의 과서관 시내전보</u>
	6	<u>소방경감(지방소방경)이하 의 휴직, 복직, 직위부여, 면직, 파면</u>	<u>6. 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의 파면, 휴직, 직위해제 복직, 직위부여, 면직및 추서</u>
	7	<u>승진임용 후보자 명부 확정</u>	<u>소방경(지방소방경)이하 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조정 및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 확정</u>
	12	<u>소방원(지방소방원)공채 시험 요구</u>	<u>소방사(지방소방사)공채 시험 요구</u>
	14	<u>소방경감(지방소방경) 이하의 추서</u>	<u>삭 제</u>

● 서울특별시미관지구조정 위원회운영규정

1971. 6. 25. 규약제1163호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미관지구건축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관지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관지구내의 건축 심제에 관한 사항
2. 미관지구부의 환경환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미관지구내의 유해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적지 부근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관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관지구장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다.
③ 위원은 전문직관 및 도시계획과장과 사장의 위촉하는 건축미술과 기타 도시계획부문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회의 정속에 이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그 직장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가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장소는 표결의을 가리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를 관장한다.

제7조 (지급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감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감사위원회의 서기는 1인을 둔다.

② 감사의 서기는 시공무원 중 임명한다.

제9조 (일비지급) ①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한하여 7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미관지구조정 위원회운영규정

1971. 6. 25 규약제116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미관지구조정에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관지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관지구내외 건축 질서에 관한 사항
2. 미관지구의 상하수 및 배기배관 관련 사항
3. 미관지구내 구역에 관한 사항
4. 주요상권지 부근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관에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건축국장 및 도시계획국장등 직장이 위촉하는 건축 미술사 기타 도시미관부문 전문인사를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촉장 부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회의소집의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정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 (회의소집의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정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하 생략)

제6조 (회의)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 (예산) 위원회의 예산은 도시계획국에서 부담한다.

제9조 (일회성임명)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일회성임명)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